



# 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72호 2022. 11. 18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## 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2-154호 도시계획시설(김주열 열사 추모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----- 1

## 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05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----- 3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15호 공시송달공고----- 15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16호 공시송달공고----- 17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29호 도시계획시설(대로3-201호,중로3-203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(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)----- 18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35호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(남원 수학체험센터 신축공사)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----- 20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2-154호

## 도시계획시설(김주열 열사 추모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남원 도시계획시설(김주열 열사 추모공원)사업인 『다목적 그늘막 조성사업』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☎063-620-64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22년 11월 18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(김주열 열사 추모공원)사업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  - 가. 명 칭 : 다목적 그늘막 조성사업
  - 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    - 사업의 위치 : 남원시 금지면 용정리 301-3번지 일원
    - 사업의 규모 : 515m<sup>2</sup>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남원시장
 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사업인가일로부터 ~ 2023. 12. 31.
5. 사업시행지의 위치도,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: 실음생략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※ 붙임참조)

## 〈편입 토지 조서〉

연번	소재지		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면	리	지번				성명	주소	권리명	권리의 종류	
1	금지	용정	301-3	대	25,041.6	515	남원시				
합계					25,041.6	515					

## 남원시 공고 제2022 -2205호

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4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소속 공무원의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에 대해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 및 변경함(안 별표 17)

1) 신 설: 현안업무 담당 공무원 실적 가산점 3점

2) 변 경

가) 국비 예산확보

- (당초) 국비 예산확보 / 가점 0.2 ~ 0.5점

(변경) 국·도비 예산확보 / 가점 0.4 ~ 1.0점

나)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

- (당초)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

(변경) 서울(장학숙 포함) 및 세종사무소 근무 공무원

다) 격무·기피부서 근무 담당자

- (당초) 매월 0.02점씩 부여 → (변경) 매월 0.05점씩 부여

### 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14. ~ 2022. 12. 04.

**4. 의견제출**
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행정지원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이메일(feelcomei@korea.kr), 직접방문

**5. 기 타**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620-60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6.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: 붙임**

#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11. .  
 제출자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소속 공무원의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에 대해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 및 변경함(안 별표 17)

- 1) 신 설: 현안업무 담당 공무원 실적 가산점 3점
- 2) 변 경

가) 국비 예산확보

- (당초) 국비 예산확보 / 가점 0.2 ~ 0.5점
- (변경) 국·도비 예산확보 / 가점 0.4 ~ 1.0점

나)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

- (당초)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
- (변경) 서울(장학숙 포함) 및 세종사무소 근무 공무원

다) 격무·기피부서 근무 담당자

- (당초) 매월 0.02점씩 부여 → (변경) 매월 0.05점씩 부여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2. 11. 14. ~ 2022. 12. 4.(20일간)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7의 1-3호, 7호, 8호, 9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7] &lt;신설 2020.12.31.&gt;

##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(제28조의3 관련)

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	가 점	비고
<b>1. 시정발전 유공</b>		
<b>1-1. 기업·기관 유치 유공자</b> (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)		
(가) 투자금액 100억 이상	1.6~2.0	
(나) “ 50억 이상 ~ 100억 미만	1.3~1.5	
(다) “ 20억 이상 ~ 50억 미만	1.0~1.2	
<b>1-2. 예산절감 기여자</b> (제도 및 기술개선 등에 의한 경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)		
(가) 1억원 이상	0.6~0.7	
(나)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0.4~0.5	
(다)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	0.2~0.3	
<b>1-3. 국·도비 예산확보</b> (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) ※ 부여제외 : 신청·심사·선정 등의 과정 없이, 일괄로 매년 또는 당연하게 지원되는 사업	0.4~1.0	
<b>1-4. 규제개혁 유공자</b> (중앙부처에서 선정되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에 한함)	0.5~1.0	
<b>2. 기관표창 유공자</b> (중앙단위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서담당, 담당자 중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부여)		
(가) 최우수	0.5	
(나) 우 수	0.3	
(다) 장 려	0.2	
※ 업무담당기간 6개월 초과자에 한함		
<b>3. 정부합동평가 우수자</b> (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) ※ 업무담당기간 6개월 초과자에 한함	0.2~0.3	
<b>4. 정부포상 및 적극행정 우수자</b> (정부우수공무원상, 대한민국공무원상,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자)	1.0	



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	가 점	비고
<b>4-1 남원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</b> (가) 최우수 (나) 우 수 (다) 장 려 (우수공무원에 대한 선택 인센티브로 다른 실적 가점과 동일내용으로 중복 불가하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선발)	0.5 0.3 0.1	
<b>5. 우수제안공무원</b> (「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함) (가) 금 상 (나) 은 상 (다) 동 상 (라) 장려상	0.7 0.5 0.3 0.2	
<b>6. 다자녀 출산 공무원(출산장려정책)</b> (가) 셋째아 출산 (나) 넷째아 출산 (다) 다섯째아 이상 출산 - 2017. 1. 1일 출생자부터 적용 (소급적용 안함) - 부부가 모두 남원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점 부여 - 출생자 및 가점 대상자 모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- 휴직자의 경우 복직시 신청가능하며 당해기간 실적으로 인정	1.5 2.5 3.0	
<b>7. 서울(장학숙 포함) 및 세종사무소 근무 공무원</b> (1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0.05점씩 2년 한도에서 부여)	0.3	
<b>8. 현안업무 담당 공무원</b> - 현안업무 담당 선정 등은 자체계획에 의함	3.0	
<b>9. 격무·기피부서 근무 담당자</b> - 당해 근무평정 기간 근무자에 대하여 매월 0.05점씩 부여 - 격무부서 선정 등은 자체계획에 의함	0.3	

## 붙임

## 관련 법령

## 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

제25조의2(실적 가산점)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5조의3(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) ① 제23조,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·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·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(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·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.



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	가 점	비고
<b>4. 정부포상 및 적극행정 우수자</b> (정부우수공무원상, 대한민국공무원상,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자)	1.0	
<b>4-1 남원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</b> (가) 최우수 (나) 우 수 (다) 장 려 (우수공무원에 대한 선택 인센티브로 다른 실적 가점과 동일내용으로 중복 불가하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선발)	0.5 0.3 0.1	
<b>5. 우수제안공무원</b> (「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함)		
(가) 금 상	0.7	
(나) 은 상	0.5	
(다) 동 상	0.3	
(라) 장려상	0.2	
<b>6. 다자녀 출산 공무원(출산장려정책)<sup>1)</sup></b> (가) 셋째아 출산 (나) 넷째아 출산 (다) 다섯째아 이상 출산	1.5 2.5 3.0	
<b>7.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</b> (1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0.05점씩 2년 한도에서 부여)	0.3	
<b>8. 격무·기피부서 근무 담당자</b> - 당해 근무평정 기간 근무자에 대하여 매월 0.02점씩 부여 ※ 격무부서 선정 등은 자체계획에 의함	0.12	
<b>1) 다자녀 출산 공무원(출산장려정책)</b> - 2017. 1. 1일 출생자부터 적용(소급적용 안함) - 부부가 모두 남원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점 부여 - 출생자 및 가점 대상자 모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함 - 휴직자의 경우 복직시 신청가능하며 당해기간 실적으로 인정		

###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

#### 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#### 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   월   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전 화 :</p> <p><b>남원시장 귀하</b>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남원시 공고 제2022 - 2215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남원시 고시 제2020-129(2020.7.24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되고, 남원시 고시 2022-138호(2022.10.14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『남원 도시계획시설(중로3-33호선) 사업』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,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, 소유자의 주소·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소유자등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, 물건의 소유자,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를 응해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보상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2022. 11. 16.

남 원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남원 도시계획시설(중로3-33호선) 사업  
- 남원신정동 오뚜그란데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
2. 사업의 위치 : 남원시 신정동 166-3 일원
3. 사업 시행자 : (주)에버종합건설 대표이사
4. 공 고 내 용 : 보상 협의 요청
5. 공 고 기 간 : 2022. 11. 16. ~ 2022. 11. 30. 까지
6.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의 내역 : 붙임 참조
7. 기            타  
가. 협의장소 : (주)에버종합건설 기획실  
【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1층 ☎ 063-859-1265】  
나. 협의방법 :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협의  
다. 협의절차,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1**      **공시송달 조서**

**1. 신정동 오투그란데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(중로3-33호선)**

수용할 토지의 표시						소유자		관계인			사유
소재지	지번	지목		면적(m <sup>2</sup> )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	
		공부	현황	공부	편입						
남원시 신정동	155-9	도	도	75	75	김*권	(송)전북 남원시 이백면 응령길 181				주소불명
남원시 신정동	155-18	도	도	16	16	김*권	(송)전북 남원시 이백면 응령길 181				주소불명



남원시 공고 제2022 - 2216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남원시 고시 제324(1977.12.30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되고, 남원시 고시 2022-139(2022.10.14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『남원 도시계획시설(소로2-4호선) 사업』 및 『남원 도시계획시설(소로2-194호선) 사업』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,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, 소유자의 주소·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소유자등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, 물건의 소유자,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를 응해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보상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2022. 11. 16.

### 남 원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남원 도시계획시설(소로2-4호선,소로2-194호선) 사업  
- 남원신정동 오투그란데2차 디아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
2. 사업의 위치 : 남원시 신정동 166-18 일원
3. 사업 시행자 : (주)에버종합건설 대표이사
4. 공 고 내 용 : 보상 협의 요청
5. 공 고 기 간 : 2022. 11. 16. ~ 2022. 11. 30. 까지
6.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의 내역 : 붙임 참조
7. 기 타

가. 협의장소 : (주)에버종합건설 기획실

【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1층 ☎ 063-859-1265】

나. 협의방법 :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협의

다. 협의절차,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붙임1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

### 1. 신정동 오투그란데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(소로2-4,소로2-194호선)

수용할 토지의 표시						소유자		관계인			사유
소재지	지번	지목		면적(m <sup>2</sup> )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계인 종류	
		공부	현황	공부	편입						
남원시 신정동	108-5	도	도	95	95	서*치	(송)전북 남원시 왕정동 572번지				주소불명
남원시 신정동	116-158	도	도	91	91	조*환	(송)전북 남원시 왕정동 470번지				주소불명

남원시 공고 제2022-2229호

## 도시계획시설(대로3-201호,중로3-203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(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)

남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남 원 시 장

2022년 11월 18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(대로3-201호,중로3-203호)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
사업명	위치	시설명	등급	노선번호	사업구간	사업량	착수일	시행청	비고
							준공예정일		
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	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일원	도로	대로 중로	3-201 3-203	인월리 209-10번지 ~ 인월리 38-2번지	L=502m B=12~25 m	(당초) 2020. 6 2022. 12 (변경) 2023. 1 2024. 12	남원시	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명 : 남원시장
  - 나. 주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5. 열람기간 :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
6.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(063-620-6464)
7.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끝.



남원시 공고 제2022 -2235호

**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(남원 수학체험센터 신축공사)  
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**

남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인 『남원 수학체험센터 신축공사』 시행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 원 시 장

2022년 11월 18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  - 가. 명 칭 : 남원 수학체험센터 신축공사
  - 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    - 사업의 위치 : 남원시 어현동 400번지 일원
    - 사업의 규모 : 기정 6,533㎡ → **변경 6,514㎡**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전라북도교육감
 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※ 붙임참조)
5. 열람기간 :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
6.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(063-620-6452)
7.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## 〈편입 토지 조서〉

( 면적단위 : m<sup>2</sup> )

번호	토지소재지		지번	지목	공부상면적	편입면적 (m <sup>2</sup> 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자		비고
	시,구	동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	
1	남원시	어현	400	답	791	716	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	전라북도 교육감			
2	남원시	어현	401	답	2,608	2,569	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	전라북도 교육감			
3	남원시	어현	402-1	답	3,078	3,078	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	전라북도 교육감			
4	남원시	어현	산93	임	1,831	12	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	전라북도 교육감			
5	남원시	어현	398	전	16	16	남원시 시청로 60	전라북도 교육감			
6	남원시	어현	산93-3	임	38	28	남원시 시청로 60	전라북도 교육감			
7	남원시	어현	724	구	30,729	95		국 (농림축산 식품부)			
소 계					39,091	6,514					

